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1055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10566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105569 판결

전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성

변론종결 2023. 3. 30.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1)) 중 소외 D 소유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외 D)과 피고 사이에 2022. 1.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D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2. 1. 18. 접수 제17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

-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480264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 2019. 8. 19. 소외 D은 소외 회사에게 7,142,322원 및 그 중 2,135,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해 10. 9.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2021. 1.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 1. 소외 D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이 송달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5. 13. 피고와 혼인하여 소외 H(I생), D(J생), K(L생),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은 2013. 4. 23. 망인이 5,400만 원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배우자인 피고와 직접 거주하여 왔다.

(3) 망인이 2021. 11. 29. 사망하게 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로서 3/9 지분을 갖는 피고와 각 2/9 지분을 갖는 망인의 자녀 소외 H, D, K은 2022. 1. 17.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2. 1. 18. 접수 제1759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인 소외 D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9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M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였으며, 피고는 M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망인의 재산상태와 피고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소외 D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채무자인 소외 D은 적극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만 해도 원리금 7,142,32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이 존재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응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D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자 피고의 자녀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는 직업군인이었던 망인과 1975. 5. 13. 혼인한 이후 20년 이상 자녀양육 등 가사를 담당하였고, 1995. 10. 2.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아들 K의 결혼을 앞두고 2012. 12. 24. 다시 혼인을 하여 약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망인과 생계를 함께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망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소외 D을 비롯한 자녀들이 기여한 내역은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D이나 다른 자녀들인 D, K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령인 피고로 하여금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게 위하여 모두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속포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았다거나 받기로 한 내역은 전혀 없다.

라. 피고의 악의에 대한 가정적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나 그 밖에 소외 D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소외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D와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D은 소외 N과 혼인하여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소외 N이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2019. 8.경이 되어서야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고령인 피고가 소외 D의 채무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부친인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의 부양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여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 2,200여만 원 상당으로 그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모친인 피고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이 남긴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와 달리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외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외 D으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의 포기를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1)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이다.